

의안번호	제 77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6월 30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2
----------	-----

제출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인용 조항에 대한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항 정정(안 제7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조제2항”을 “제3조제2항”로 한다.

별표의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별지 2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별지 3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별지 4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별지 5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u>제9조</u>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제4조제2항</u>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 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 ----- <u>제10조</u> ----- ----- ----- -----, <u>제3조제2항</u> ----- ----- ----- -----.</p>

관계 법령 발췌

□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 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③ 포상금은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